瑞山市環境保全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2000. 11. 7
産業建設委員會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0. 10. 17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0. 10. 19

라. 上程日字 : 2000. 11. 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環境保護課長 魯商根)

가. 提案理由

o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산시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 출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환경보전시책의 해소를 위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o 기금의 조성재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에서 납입하는 늘푸른 통장의 환경기금, 기금의 운용 수임금으로 정함(안 제3조).

o 기금의 운용관리는 서산시금고에 서산시환경보전기금 계좌를 설치운용하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절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관리하도록 정함(안 제4조).

o 기금의 용도 및 운용계획은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과 환경관리연구, 조사 등 환경보전시책 추진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5조).

o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 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금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6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본 조례는 현대사회 생활에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이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o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 추진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수정안 별첨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 ① (생략) 1.~3.(생략)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1.~4.(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② ---------- ---------- --------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115호
의결년월일	2000. 10. . (제 회)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10. 17.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제191호

□ 제정이유

○ 서산시의 출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환경보전시책의 해소를 위한 재정력 확보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안 제3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 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에서 납입하는 늘푸른통장의 환경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나.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조)

○ 기금은 서산시 금고에 서산시환경보전기금계좌를 설치 운용

○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의 예에 의하여 관리

다.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

○ 환경관련 연구, 조사등 사업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서산시환경기본조례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나. 예산조치 : 2001년도 본예산 144백만원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서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에는 다음 각호의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4. 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에서 납입하는 늘푸른통장의 환경기금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는 다음 각항에 따른다.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산시 금고에 서산시환경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담당관
2. 기 금 운 용 관 : 환경보호과장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환경오염, 환경훼손 방지 및 예방사업
2. 환경관련 연구, 조사 등 학술사업
3. 환경보전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 조성계획
3. 기금 사용계획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등)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금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기금 지원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고 및 환수) ①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서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